

의안번호	제 792 호
의결 연월일	2018. . . . (제 회)

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발의자	김영주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18년 3월 14일

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(김영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9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3월 14일

제 출 자 : 김영주, 이양섭, 박우양
박종규, 윤은희, 연철흠

1. 제정이유

-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“재단법인 충북학사”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설립 목적에 대한 규정 (안 제1조)
 - 충청북도학사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
- 나. 재단 사업에 대한 규정 (안 제4조)
 - 장학시설 관리·운영, 장학지원 등
- 다. 재단의 임원에 대한 규정 (안 제7조)
 -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
- 라. 재단의 재원 조성에 대한 규정 (안 제8조)
 -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·보조금·대행사업비
 -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·기부금·후원금
 -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
- 마. 재단에 대한 검사·감독에 대한 규정 (안 제11조)
- 바. 재단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 (안 제13조)
 -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가능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8 - 20 호

다. 협의 :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

라.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

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학사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 설립 및 명칭) 이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, 그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학사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사업)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학시설의 관리·운영
 2.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
 3. 충청북도학사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위탁하는 사업
 4.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- ② 재단은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정관)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, 명칭, 주사무소의 소재지
2. 임원에 관한 사항
3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재단의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5.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7. 해산에 관한 사항

8. 공고사항 및 방법
9.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기구)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단에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.

제7조(임원 등)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, 임원의 정수, 임기, 임면,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8조(재원의 조성)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와 도내 시·군의 출연금·보조금·대행사업비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·기부금·후원금
3. 기본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
4. 그 밖의 수익금

제9조(재정지원) ① 도지사 및 도내 시장·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0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1조(검사·감독 등)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③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·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재단에 대한 제재) ① 도지사는 재단이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도지사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잔여재산의 귀속)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귀속한다.

제15조(운영규정)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재단은 정관 제정 및 변경, 기구 및 정원의 변동,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, 보수, 재산의 취득·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사항은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8조(정관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
5.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
6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7. 임직원에 관한 사항
8. 이사회 운영
9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10. 예산과 회계
11. 정관의 변경
12. 해산에 관한 사항
1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출자·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26조(검사·보고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
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

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1호

○ 사 유

- 이 조례는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(재)충북학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예산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-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김 두 환